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기영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- 의회 기본 조례의 제49조제3항제7호는
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로
‘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 출연법인의 임원」을
규정하고 있으나
- 2014년 3월 2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 운영에
대한 사항이 「지방공기업법」에서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
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·제정된바,

이를 조례상에 반영하여 관련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가 상위법과 조화를 이루고 법질서 체계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원안 의결을 건의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